

#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정관

제정 2013. 1. 17.  
(일부개정) 2013. 5. 21.  
(일부개정) 2014. 6. 24.  
(일부개정) 2015. 1. 20.  
(일부개정) 2015. 10. 20.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(이하 “전당” 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전당은 전통문화를 육성·지원·진흥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·현대화·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전당의 사무소는 전주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에 둔다.

제4조(사업) ①전당은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전통문화시설(연구시설 등)의 운영 및 관리<개정 2015.1.20.>
2. 전통문화의 보존, 계승, 육성, 재창조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
3. 전통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
4. 전통문화 디자인 개발 및 보급·지원
5. 전통문화 관련 체험·교육 및 전통문화상품 전시·판매
6. 전통음식 체험·교육·전시·판매 및 음식창의도시 구현
7. 전통문화 및 다양한 공연·영상·독서 문화 선도
8. 전통문화(한지 등) 산업화를 위한 신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<개정 2015.1.20.>

9. 한지산업 육성·진흥을 위한 기반조성<신설 2015.1.20.>
  10.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위탁·대행업무
  11. 그 밖의 전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- ②전당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 전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## 제2장 임 원

제5조(임원) ①전당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이 사 장 1명
2. 원 장 1명
3. 이 사 15명 이내(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)
4. 감 사 2명

②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
제6조(이사장) ①이사장은 전주시 부시장으로 한다.

- ②이사장은 이사회 회의의 주재하고 의장이 된다.
- ③이사장은 대외적으로 전당을 대표한다.
- ④이사장의 유고, 궐위, 그 이외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원장) ①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.

- ②원장은 전당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- ③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 출자·출연기관 인사·조직지침에 따라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및 임기 중의 공적평가, 경영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 원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60일내에 선임하여야 한다.<신설 2015.10.20.>

④원장이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,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,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원장을 해임 의결할 수 있다.<신설 2015.10.20.>

**제8조(이사)** ①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.

②다음 각 호의 자는 재임기간 중 당연직 이사로 한다.

1. 전주시 부시장
2. 삭 제<삭제 2014.6.24.>
3. 전주시 업무관련 담당 국장
4.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

③선임직 이사는 전통문화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

④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전당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고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**제9조(감사)** ①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 감사 2인중 1인은 전주시 업무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1인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 있는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<2015.10.20.개정>

②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전당 재산관리 및 회계분야 감사
2. 전당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장에게 보고
4.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
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

**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<개정 2015.1.20.>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4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5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. 주무관청에 의하여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**제11조(임원의 임기)**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<2015.10.20.개정>

- ②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.
- ③선임직 임원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며,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④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. 다만,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**제12조(임원의 해임)**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
1. 고의 또는 과실로 전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전당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2. 고의 또는 과실로 전당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한 때
3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
4.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

## 제3장 이 사 회

**제13조(설치 및 구성)** ①전당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전당에 이사회를 둔다.

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<개정 2015.1.20.>

**제14조(회의)** ①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.

②정기 이사회는 연2회,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.

1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
3. 제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
③이사장은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④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**제15조(의결정족수 등)**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이사장도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③이사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④제3항에 의한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서면의결)**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서면 의결사항은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7조(기능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전당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2. 전당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4. 전당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5. 전당의 해산에 관한 사항
6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7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8.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9.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8조(의결제척)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1. 이사의 임면사항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사 자신과 전당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

제19조(의사록) 전당은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, 원장 및 감사가 기명날인한 후 사무소에 보관한다.

## 제4장 자문위원회 등

제20조(설치) 이사장은 전당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21조(구성 및 운영) 자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## 제5장 재산 및 회계

제22조(재산) ①전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기본재산은 전당의 설립 및 자본의 증식을 위해 시 및 그 외의 출연으로 조성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“별지1” 과 같다.

③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하며, 전당의 사업 또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.

④재산은 그 목록을 작성하여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, 예금의 경우에는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제27조에 의한 결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.

제23조(재산의 관리) ①전당의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임대·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전당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전당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
③전당의 재산 중 기부에 의한 모금액은 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.<신설 2015.10.20.>

제24조(회계연도) ①전당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.

②전당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.

제25조(경비의 충당) 전당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금,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, 기부금 또는 전당의 사업수입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26조(사업계획 및 예산) ①전당은 매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·세출예산서를 작성,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제1항의 제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27조(결산) ①전당은 매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,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

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28조(잉여금의 처리) 전당의 매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.

1. 이월손실금 보전
2. 다음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의 이월
3.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

제29조(임원의 보수) 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별도 규정에 의한 회의출석수당과 여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30조(감사의 실시) 감사는 회계 등 전당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## 제6장 조 직

제31조(구성) 전당에는 원장 1인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조직을 두고 사무조직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2조(직원) ①직원은 별도로 정하는 전당의 규정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. 다만, 원장의 부재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임면할 수 있다.

<개정 2015.1.20.>

②직원의 승진, 보수,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<개정 2013.5.21.>

제33조(공무원의 파견 요청) 전당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34조(지도감독) ①시장은 전당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.

②시장은 전당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## 제7장 보 칙

제35조(정관의 변경) 전당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6조(해산) ①전당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에게 해산을 요청하며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전당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.

제37조(시행규정)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38조(준용)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,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.<개정 2015.1.20.>

## 부 칙 <2013. 1. 17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회계연도) 전당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 및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시장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전당이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4조(최초 임원의 임기) 최초 임원의 임기는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.

제5조(발기인의 기명날인) 전당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“별지2” 와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.

## 부 칙 <2013. 5. 21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 <2015. 1. 20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